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서 면 답 변 서

2023. 10.

법 제 처

- 목 차 -

I. 김도읍 위원장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규제 개혁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법령정비와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필요하므로 법제처의 적극 검토 의견 요청 1
2.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는지? 2

II. 정점식 위원

- 1-1. 지자체들의 필수조례 입법 마련 정도는? 6
- 1-2.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필수조례 마련율이 상당히 낮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7
- 1-3. 필수조례 도과 기간 검토 결과 기간이 도과한 위임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법제처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권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8
- 1-4.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제도 실적이 미미한데 실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9
- 1-5.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들의 필수조례 입법지원을 위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진 않은지? 10
- 2-1. 법령해석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11

2-2. 일부 법령해석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장기간 소요된 사례를 엄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 필요	12
3-1. 국회가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상충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언론보도 관련 최민희 전 위원이 반년 가까이 임명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드셨는데 “추천은 추천일 뿐,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림	13
3-2.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인지?	14
4-1. '22. 7.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요청한 도로교통법 해석 관련, 법제처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15
4-2. '22. 10. 28. 법제처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경찰청에 회신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함께 통보하였는데, 그 후 경찰청에서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는지?	16
4-3. 미리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청을 포함하여 관계 부처간 법령개정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의견은?	
5. 법제처는 현재 차관급 기관이지만 장관급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한 경우가 더 많은데, 차관급 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법제처장님께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생각은?	18

- 6-1. 규제개선 관련 법령들의 경우 입법예고에서 법제처 심사 사이에 중간
과정 없이 법제처 심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그 이유는 무엇
인지? 19
- 6-2. 법제처 운영규정 내 심사의뢰 · 법제처 심사 및 검토에 대한 최대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의견은? 20
- 6-3. 법제처에서 스스로 명시한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킬러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자구책 검토하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21

III. 소병철 위원

1. 입법예고 기간이 현격히 단축된 시행령(공직자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경찰국 신설 관련 행안부 직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방송법) 규정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시비에 걸려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5
2. 위 논란되는 시행령들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상위법률의 위반 여부를
법제처 심사를 하는 것인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 26
3. 윤석열 정부 들어 개정된 시행령이 위헌 · 위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27
4.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집회 제한 가능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해당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시 충분히 고려는 한 것인지? 28

5.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다툼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사실상 법령안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29
6.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들에 대해 국회가 재검토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검토하여 수용 여부 및 미수용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30
7. 2022년 12월 법제처장님 인터뷰 중 「검찰청법」과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부분 관련,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인지
여부 31
8. 시행령에 대한 통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32

IV. 박용진 위원

1. 지방의회 기능 강화에 발맞춰 지자체 입법컨설팅 사업 확대 등
개선방안이 있는지? 36
2. 대검찰청은 50개가 넘는 행정규칙이 비공개인데,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을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공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지? 37
3. 정부입법계획 이행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법제처의 법제 지원
역할 강화 필요 38

V. 박주민 위원

1. 최민희 전 의원의 유권해석 결과가 전례 없이 늦게 나오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42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집시법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개정령(안) 심사 시 법제처 심사 내용 43

VI. 유상범 위원

1. 국민법제관의 의견제출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정비 완료된 사례의 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법제관들이 제출한 의견이 실제 법령정비에 반영되는 반영률이 낮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64
2. 국민법제관 구성이 특정 지역, 특정 직업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이 해마다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엔 아직 편중된 지역, 직업 비율을 개선 해야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민 법제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65

VII. 이탄희 위원

1.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법제처가 법령을 심사하기 위해 검토한 내용 일체와 심사하는 전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필요 69

김도읍 위원장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규제 개혁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법령정비와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므로 법제처의 적극 검토 의견 요청

< 담당자: 법령정비과 오청미 서기관 ☎ 044-200-6572 >

< 담당자: 규제법제혁신과 윤중섭 사무관 ☎ 044-200-6845 >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소관부처(산업부 등)와 협의하여 법제적 지원과 법령정비 필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2.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는지?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김치영 사무관 ☎ 044-200-6565 >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 일부 법안의 경우 소관 부처의 정책결정·검토 지연, 부처 간 이견 등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상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률안 161건 중 아직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은 총 28건(17.4%)이며, 이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13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음.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상 법안들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현황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고, 입안 지원 및 부처 이견 조정 등의 입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정점식 위원

1-1. 지자체들의 필수조례 입법 마련 정도는?

< 담당자: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박예지 사무관 ☎ 044-200-6757 >

☐ 지자체별 필수조례 마련 현황

지방자치단체	상위법령 시행일 기준 필수조례 마련율	지방자치단체	상위법령 시행일 기준 필수조례 마련율
서울특별시	65.69%	강원특별자치도	70.42%
부산광역시	60.78%	충청북도	72.23%
대구광역시	63.53%	충청남도	72.77%
인천광역시	62.38%	전라북도	71.5%
광주광역시	66.49%	전라남도	70.97%
대전광역시	67.08%	경상북도	70.89%
울산광역시	65.72%	경상남도	74.18%
세종특별자치시	77.4%	제주특별자치도	81.04%
경기도	75.8%	총 계	70.4%

※ 해당 필수조례 마련율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1-2.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필수조례 마련율이 상당히 낮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담당자: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박예지 사무관 ☎ 044-200-6757 >

- ☐ 조례위임사항을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필수조례 제때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높지 않은 측면과 함께, 상위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이 짧아 상위법령 시행일 전에 필수조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필수조례 마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자체의 필수조례 입안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겠음.

1-3. 필수조례 도과 기간 검토 결과 기간이 도과한 위임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법제처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권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 담당자: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박예지 사무관 ☎ 044-200-6757 >

□ 법제처는 지자체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제고를 위하여 제·개정된 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을 상위법령의 공포일부터 **평균 2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 **합동평가***에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를 포함하여 필수조례의 제때 마련을 독려하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평가로, 법제처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제·개정 전에 필수조례를 미리 검토하는 **필수조례 예비검토** 등 필수조례의 입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및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관련 협력을 통하여 소관부처의 필수조례 마련 지원을 독려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필수조례 마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자체의 필수조례 입안을 지원하는 등 노력 하겠음.

1-4.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제도 실적이 미미한데 실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담당자: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박예지 사무관 ☎ 044-200-6757 >

□ 최근 5년간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 30. 기준)
추진실적	194건	100건	3건	102건	102건

※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은 주로 제정된 법령에 따른 필수위임사항에 대한 입법모델을 마련하는데, 2021년의 경우 제정법령에 따른 필수위임사항이 적어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실적이 적음

-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은 상위법령의 필수위임사항에 대하여 입법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 필수위임사항의 내용, 소관부처의 의견 및 입법모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모델 마련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실적은 해당연도의 필수위임사항의 건수 및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수요조사를 통해 입법모델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실적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필수조례 입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1-5.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들의 필수조례 입법지원을 위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진 않은지?

< 담당자: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박예지 사무관 ☎ 044-200-6757 >

- 법제처는 소관부처와 필수조례 입법지원 업무를 분담하면서,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위임사항을 상위법령의 공포일부터 평균 2일 이내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 소관부처가 마련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참고 자치법규안이 없는 필수위임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법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도 소관부처의 필수조례 마련 지원을 독려하는 등 소관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필수조례 마련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공동의 입법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2-1. 법령해석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이선미 사무관 ☎ 044-200-6711 >

-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처리기간은 질의 요지를 확정된 날부터 평균 35~39일 정도이나,
- 법령해석 안건의 복잡성이나 난이도,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 조회 기간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

2-2. 일부 법령해석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장기간 소요된 사례를 엄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 필요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이선미 사무관 ☎ 044-200-6711 >

□ 법령해석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임.

- 다만, 공정하고 신중한 해석을 위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 법령해석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법령해석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1. 국회가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상충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언론보도 관련 최민희 전 위원이 반년 가까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드셨는데 “추천은 추천일 뿐,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담당자: 경제법제국 신지원 사무관 ☎ 044-200-6637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추천한 자가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 법률상 추천, 선출, 지명 등 문구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음.

3-2.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인지?

< 담당자: 경제법령해석1과 정지윤 사무관 ☎ 044-200-6716 >

- ☐ 방송통신위원회 법령해석 요청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의 법령해석으로서, 해당 안건은 검토 중에 있음.

4-1. '22. 7.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요청한 도로교통법 해석 관련, 법제처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 담당자: 행정법령해석과 서유진 사무관 ☎ 044-200-6718 >

- 해당 법령해석 시 경찰청, 교육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외부위원(위원 총 9명 중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22년 제32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22. 10. 4.) 심의에서 ① '통학 등'으로 규정된 법령 문언, ② 어린이 안전 확보 필요에 대한 입법취지, ③ 어린이 보호 강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온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고,
- 법령해석 결과를 경찰청 등에 회신('22. 10. 28.)하면서 법령정비 권고 의견을 함께 통보하였음.

4-2. '22. 10. 28. 법제처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경찰청에 회신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함께 통보하였는데, 그 후 경찰청에서 법령개정이 진행되었는지?

< 담당자: 행정법령해석과 서유진 사무관 ☎ 044-200-6718 >

- 현장체험학습 관련 현장의 문제가 보도된 후 법제처는 해당 법령해석 회신 후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 마련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음.
- 이에 따라 관련 부처(경찰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협의('23. 9. 8., 9. 13.)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23. 9. 22.) 되어 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음.
- 그 이후 추가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이해식 의원등)이 **발의**('23. 8. 30, 9. 5.)되어 '23. 10. 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경찰청에서 이에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음.

4-3. 미리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청을 포함하여 관계 부처간 법령 개정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의견은?

-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부처간 협조·협업을 통해 부작용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이선미 사무관 ☎ 044-200-6711 >

< 담당자: 행정법령해석과 서유진 사무관 ☎ 044-200-6718 >

□ 위원님의 지적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미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다만, 법제처가 주도해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23. 9. 8., 9. 13.) 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정비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적법화하도록 하였음.

* 관련 규정 13건 중 총 8개 규제 적용 배제·완화('23. 9. 22. 개정·시행)

□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부처간 협업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시에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음.

5. 법제처는 현재 차관급 기관이지만 장관급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한 경우가 더 많은데, 차관급 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법제처장님께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생각은?

< 담당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오정애 서기관 ☎ 044-200-6554 >

-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정책 조정을 하는 것처럼,
 - 법률안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규정이 장애가 되어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정부입법절차에 있어서도 소관부처나 관련부처 간 신속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 입법과정의 조정이 실질적 효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과 소관부처 장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내에서 법제에 관한 총괄하는 법제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 입법에 관하여 정부 내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 법안 등 국회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6-1. 규제개선 관련 법령들의 경우 입법예고에서 법제처 심사 사이에
 중간 과정 없이 법제처 심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상황.
 -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령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법제처 심사 의뢰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 관계 부처 이견 미조정, 이해관계자 반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의 내부 검토 미완료 등에서 기인한
 경우가 다수 있음.

6-2. 법제처 운영규정 내 심사의뢰·법제처 심사 및 검토에 대한 최대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의견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령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법령안은 제정, 전부개정 등 제·개정 방식에 따른 심사 대상 조문 수, 법리적 쟁점의 복잡·첨예한 정도, 법제처 심사 의뢰 이후 부처 이견 표출 여부 및 이견의 복잡성 정도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심사기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앞으로 법제처는 사전심사 등의 활용 및 신속한 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보다 신속한 법령안 심사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음.

6-3. 법제처에서 스스로 명시한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킬러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자구책 검토하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령안의 제·개정 방식, 분량,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첨예함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 심사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는 심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 입법절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제 심사기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모니터링 및 입법예고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안건으로서 법제처 미접수 법령안에 대해서는 절차 지연 사유 파악 및 관리
 -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입법절차가 미완료된 법령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접수·관리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제 법령 심사 기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 추진
 - 사전심사 및 본심사의 신속한 추진

소병철 위원

1. 입법예고 기간이 현격히 단축된 시행령(공직자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경찰국 신설 관련 행안부 직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방송법) 규정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시비에 걸려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담당자: 행정법제국 이민주 사무관 ☎ 044-200-6607 >

< 담당자: 행정법제국 이기재 사무관 ☎ 044-200-6604 >

< 담당자: 경제법제국 신지원 사무관 ☎ 044-200-6637 >

□ 법령안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단축·생략할 수 있음.

○ 말씀하신 법령안들은 국민의 권리·의무 등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적은 국가사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 및 행정조직·운영과 관련된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 등으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협의를 진행함.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2. 또한 위 논란되는 시행령들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상위법률의 위반 여부를 법제처 심사를 하는 것인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

< 담당자: 행정법제국 이민주 사무관 ☎ 044-200-6607 >

< 담당자: 행정법제국 이기재 사무관 ☎ 044-200-6604 >

< 담당자: 경제법제국 신지원 사무관 ☎ 044-200-6637 >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모두 헌법 및 상위법률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고, 헌법 및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함.

3. 윤석열 정부 들어 개정된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제처는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법령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점에 유의하여 법령심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집회 제한 가능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해당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시 충분히 고려는 한 것인지?

< 담당자: 행정법제국 박예지 사무관 ☎ 044-200-6619 >

- 2023. 10. 17. 공포·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서,
- 같은 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5.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다툼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사실상 법령안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 법제처는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법령안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법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이견 등을 확인·검토하는 등 성실히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다툼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6.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들에 대해 국회가 재검토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검토하여 수용 여부 및 미수용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하여 2015년 6월 「국회법」 재의요구 당시와 입장 변화가 없음.

7. 2022년 12월 법제처장님 인터뷰 중 「검찰청법」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부분 관련,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인지 여부

< 담당자: 행정법제국 이기재 사무관 ☎ 044-200-6604 >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함.

8. 시행령에 대한 통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의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해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은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 그 도입 여부는 해당 제도의 장단점과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박용진 위원

1. 지방의회 기능 강화에 발맞춰 지자체 입법컨설팅 사업 확대 등
개선방안이 있는지?

< 담당자: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양지호 사무관 ☎ 044-200-6793 >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컨설팅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21년에는 입법컨설팅 신청 주체를 기초 지방의회로 확대하고, 23년에는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의회까지 확대함.

-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및 각종 자치입법
관련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실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음.

2. 대검찰청은 50개가 넘는 행정규칙이 비공개인데,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을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공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지?

< 담당자: 법제지원총괄과 김정철 사무관 ☎ 044-200-6942 >

□ 행정규칙의 발령과 공개에 관한 판단권은 소관 부처에 있으므로 전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비공개 행정규칙의 전문을 요청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규칙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비공개 행정규칙의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 올해 비공개 행정규칙 공개 전환을 위해 260건의 전문을 요청하여 37건을 공개 전환한 바가 있음.

3. 정부입법계획 이행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법제처의 법제 지원 역할 강화 필요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김치영 사무관 ☎ 044-200-6565 >

- 정부입법 추진 중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에 따른 철회를 제외한 일부 법안의 경우 소관 부처의 정책결정·검토 지연, 부처 간 이견 등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상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따라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상 법안들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현황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고, 입안 지원 및 부처 이견 조정 등의 입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박주민 위원

1. 최민희 전 의원의 유권해석 결과가 전례 없이 늦게 나오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담당자: 경제법령해석1과 정지윤 사무관 ☎ 044-200-6716 >

☐ 해당 안건은 검토부서에서 검토중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집시법 시행령)[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개정령(안)
심사 시 법제처 심사 내용

< 담당자: 행정법제국 박예지 사무관 ☎ 044-200-6619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안은 [붙임] 참조

[붙임]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서의 장이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통행량, 집회 및 시위 개최 현황, 주요 시설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소음기준 중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은 10분간 측정하던 것을 5분간 측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를 2회 이상 기준 초과로 조정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도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4. ~ 4.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별표 2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나. 공공도서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제12조제1항 관련)

주요 도시 명	주요 도로명	시점	경유지	종점
서울특별시	① 세종대로-한강대로	종로구 자하문로 219 (자하문터널 북단)	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	한강대교 남단
	②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구로구 경인로 90 (동부제강입구)	오류동-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사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	망우로 구리시경계지점
	③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울곡로-장충단로	강서구 하늘길 76 (공항 내 이마트)	양화교-성산대교-연세대-금화터널-광화문-동대문	중구 퇴계로 320 (광희교차로)
	④ 청계천로-천호대로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	청계천로 1가~7가-군자교-천호대교-길동-상일동	강동구 천호대로 1477 (서울상일초교)
	⑤ 경인고속도로-선유로-양화로-을지로-광나루로	양천구 지양로 140 (푸드원)	경인고속도로입구-양화대교-동교동-을지로 1가~6가-성동교-광장동	광진구 천호대로 813 (광장사거리)
	⑥ 퇴계로	중구 세종대로 10-2 (연세빌딩 뒤)	퇴계로 1가~6가	중구 을지로 299 (한양공고삼거리)

⑦ 통일로-청파로-원효로-여의대방로-시흥대로	은평구 통일로 1190 (진관차고지)	홍은동-독립문-청파동-원효대교-대림동-시흥동	금천구 시흥대로 6 (석수역 1번 출구)
⑧ 칠패로-남대문로-우정국로	중구 칠패로 16 (염천교 입구)	남대문 4가-남대문로 1가-종로빌딩타워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⑨ 삼일대로	종로구 율곡로 64 (일본문화원)	낙원동-삼일빌딩	남산 1호터널 입구 북단
⑩ 돈화문로-충무로	종로구 돈화문로 98 (돈화문)	종로 3가-을지로 3가-퇴계로 3가	중구 충무로 2 (매일경제)
⑪ 창경궁로-동소문로-도봉로	중구 퇴계로 235 (퇴계로4가교차로)	을지로 4가-종로 4가-성대 입구-한성대 입구-송중동-수유동-도봉동	도봉구 도봉로 983 (청화자원)
⑫ 대학로-동호로-장충단로-한남대로-강남대로	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은행 혜화점)	이화동-장충동-반얀트리호텔-한남더힐-한남대교-한남대교 남단-강남역 사거리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 (염곡사거리)
⑬ 소공로-녹사평대로-반포대로	중구 소공로 119 (플라자호텔)	한국은행-우리은행 본점-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반포대교-예술의전당 앞 삼거리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⑭ 안암로-종암로	동대문구 안암로 6 (대광고교)	안암오거리-고려대역-종암사거리-미아 사거리	성북구 종암로 214-3 (미아사거리)
⑮ 정릉로-세검정로-연희로	동소문로 215 (길음교 하단)	국민대-상명대-연희 교차로 입구	서대문구 연희로 78 (연희입체 교차로)

	⑯ 테헤란로-서초대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포스코 사거리-선릉역 사거리-역삼역 사거리-법원검찰청사거리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초역사거리)
	⑰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	삼각지 고가도로-녹사평역사거리-한강진역-버티고개역-청구역	중구 다산로 248 (신당파출소)
	⑱ 서빙고로	용산구 한강대로 60 (용산역앞교차로)	이촌역-서빙고동주민센터-한남역	용산구 독서당로 14길 73-6 (한남대교 북단교차로)
	⑲ 영동대로	강남구 영동대로 741 (영동대교남단 교차로)	봉은사역-삼성역-대모산입구역	강남구 일원동 688 (일원터널교차로)
	⑳ 남부순환로	강서구 남부순환로 11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신월IC-오류IC-시흥IC-신림역-사당역-서초IC-도곡역-탄천1교차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산광역시	① 구덕로	서구 망양로 57 (구덕운동장)	자갈치 역	중구 중앙대로 2 (롯데광복점)
	② 중앙대로-자성로-범일로	중구 중앙대로 2 (롯데광복점)	자성대 교차로-서면 교차로-양정 교차로-시청-연산 교차로-내성 교차로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

③ 중앙대로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	남산역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역)
④ 가야대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교차로)	주례 교차로-서부산낙동강교	강서구 남해2지선 고속도로 19 (서부산휴게소)
⑤ 수영로	남구 전포대로 5 (문현 교차로)	대남 교차로-수영교차로	수영구 수영로 741번길 20 (수영교 사거리)
⑥ 충장대로	중구 중앙대로 80 (중앙역)	부산세관-중앙부두-5부두	남구 전포대로 5 (문현 교차로)
⑦ 황령대로	수영구 황령대로 473번길 15 (대남 교차로)	국민의 힘 부산시당-도시가스오거리	수영구 황령대로 521 (광안대교 입구)
⑧ 낙동대로	서구 대영로 1 (서대신 교차로)	괴정 교차로-당리주민 센터 사거리- 하단 교차로	사하구 낙동대로 581 (하단강변 삼거리)
⑨ 충렬대로	동래구 충렬대로 84 (미남 교차로)	내성 교차로-안락교차로-원동교-해운대경찰서-삼호가든 앞 교차로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 (올림픽 교차로)
⑩ 해운대해변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1 (수영교)	우동항삼거리-요트경기장-동백사거리-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해운대온천사거리-중동사거리	해운대구 해운대로 762 (오산공원)

대 구 광 역 시	① 중앙대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 산격청 사)	중앙 네거리	남구 중앙대로 138 (영대병원 네거리)
	② 국채보상로	서구 달서로 108 (비산 네거 리)	중앙 네거리	수성구 동대구 로 405 (벤처 벨리 네거리)
	③ 태평로	중구 태평로 25 (달성 네거리)	대구역 네거리	중구 국채보상 로 703-7 (동 인 네거리)
	④ 달구벌대로	서구 달구벌대 로 1903 (반고 개 네거리)	반월당 네거리	수성구 동대구 로 311 (범어 네거리)
	⑤ 동대구로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 리)	벤처벨리 네거리	수성구 동대구 로 311 (범어 네거리)
	⑥ 명덕로	달서구 명덕로 23 (내당 네거 리)	명덕 네거리	중구 명덕로 333 (대봉교)
	⑦ 공평로-대봉로	중구 태평로 218 (교동 네거 리)	봉산 육거리 (유 신학원)	남구 중앙대로 22길 273 (중 동교)
	⑧ 달성로-현충로	중구 태평로 25 (달성 네거리)	신남 네거리-삼각 지 네거리	남구 현충로 87-1 (앞산 네 거리)
	⑨ 아양로 - 신암 로-동덕로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 리)	공고 네거리-동인 네거리	중구 달구벌대 로 2191 (삼덕 네거리)

인 천 광 역 시	① 우현로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남측)	경동 사거리	중구 우현로 25 (답동 사거리)
	② 제물량로	동구 제물량로 437-1 (화수 사 거리)	답동 사거리	남동구 남동대 로 940 (간석 오거리)
	③ 참외전로	중구 제물량로 317 (남경포브 아파트 삼거리)	유동 삼거리	미추홀구 참외 전로 288 (승 의시장 사거 리)
	④ 부평대로	부평구 광장로 4 (코아빌딩)	산곡입구 삼거리	계양구 아나지 로 282 (경인 고속도로 부평 IC 서울방향)
	⑤ 인주대로	남동구 인주대 로 604 (시청 삼 거리)	승기 사거리	미추홀구 인주 대로 384 (신 기 사거리)
	⑥ 남동대로	남동구 남동대 로 940 (간석 오 거리)	석천 사거리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
	⑦ 주안로	미추홀구 주안 로 8 (도화초교 사거리)	석암 지하차도	남동구 주안로 270 (주원 삼 거리)
	⑧ 예술로	남동구 예술로 118 (터미널 사 거리)	경찰청 앞 삼거리	남동구 예술로 174 (문예회관 사거리)
	⑨ 경원대로	미추홀구 경원 대로 754 (승기 사거리)	선학역 사거리	연수구 송도 1 교 고가 밑 (외 암도 사거리)

광 주 광 역 시	① 금남로	북구 금남로 99 (수창 초등학교)	금남로5가역-금남로4가역-문화전당역교차로-동구청앞교차로-전대의대앞	동구 제봉로 1 (남광주역)
	② 상무대로	광산구 상무대로 416-99 (공항역)	송정고가차도-송정공원역-광주송정역	광산구 상무대로 125-99 (도산역)
	③ 봉선로	남구 봉선동 1134-21 (봉선광명 메이루즈 앞)	백운교차로	남구 대남대로 173 (김연우한의원 앞)
	④ 우치로	북구 우치로 222 (오치한전)	전대후문-북구청	북구 서암대로 243-2 (중흥삼거리)
	⑤ 무진대로	서구 무진대로 93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상무주공아파트 앞	서구 무진대로 714 (상무2-2근린공원)
	⑥ 윤천로	서구 윤천로 213 (무등일보 앞 교차로)	KBS광주방송국-전남지방 우정청 앞 교차로	서구 무진대로 714 (상무2-2근린공원)
대 전 광 역 시	① 중앙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중앙로 네거리-중구청 네거리	중구 중앙로 8 (서대전 네거리)
	② 대전로	동구 대전로 691 (인동 네거리)	원동 네거리-대전역 네거리	동구 대전로 882 (삼성 네거리)
	③ 한밭대로	서구 월평로 13번길 84 (갑천대교 네거리)	누리 네거리-샘머리 네거리	서구 문정로 271 (재뜰 네거리)

	④ 대덕대로	서구 대덕대로 178 (큰 마을 네거리)	KT 충청본부-만년 네거리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 (대덕대교 네거리)
울산광역시	① 삼산로	남구 삼산로 3번길 2 (공업탑로타리)	변영 사거리	남구 산업로 654 (태화강역)
	② 중앙로	남구 삼산로 74 (달동 사거리)	울산시청	남구 중앙로 313 (태화로타리)
수원시	① 매산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 사거리)	교동 사거리	팔달구 정조로 910 (장안문)
	② 경수대로	권선구 경수대로 270 (터미널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③ 중부대로	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영통구 중부대로 490 (삼성삼거리)
	④ 도청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도청로 삼거리)	광고중앙역	영통구 도청로 10 (광고중앙로 사거리)
성남시	① 성남대로	수정구 성남대로 1543 (북정역)	태평역 사거리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② 수정로	수정구 성남대로 1233 (태평역 사거리)	성남시의료원 입구 삼거리	수정구 수정로 233 (성남초교 사거리)
	③ 산성대로	수정구 산성대로 91 (모란 사거리)	신흥 사거리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오거리)

안양시	① 경수대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비산 사거리	동안구 경수대로 426 (포도원 사거리)
부천시	① 길주로	원미구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천시청	원미구 송내대로 236 (송내대로 사거리)
춘천시	① 중앙로	중앙로 1 (강원도청)	중앙로터리	중앙로 176 (근화 사거리)
	② 금강로	명동길 2 (중앙로터리)	춘천KT지사	금강로 1 (구 캠프 페이지 사거리)
	③ 금강로	명동길 2 (중앙로타리)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금강로 110 (운교 사거리)
청주시	① 상당로-청남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 칠거리)	청주교육대학	서원구 청남로 1853 (이마트 청주점)
	② 가로수로-사직대로	홍덕구 가로수로 1174 (터미널 사거리)	산업단지 육거리	상당구 사직대로 379 (상당공원)
전주시	① 팔달로-기린대로	태조로 51 (풍남문 교차로)	한국은행 전북본부	덕진광장로 1-1 (덕진광장)
	② 충경로	관선3길 14 (지방병무청 오거리)	충경로4가	전주천동로 224 (다가교)
광양시	① 백운로-제철로-백운1로	백운로 1103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금호대교-제철1문 사거리-태인교-태인대교	진월면 백운 1로 518 (진월TG 삼거리)
포항시	① 중앙로-동해안로	북구 삼호로 31 (포항중앙도서관)	육거리-오거리-고속버스터미널-형산 교차로-포스코본사 사거리	남구 신항로 10 (청림동 주민센터)

창원시	① 창원대로	의창구 창원대로 1 (창원대로 입구)	내동상가	성산구 창원대로 1086 (7호 광장)
	② 중앙대로-창이대로	성산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삼거리)	창원광장-도청 앞 교차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③ 원이대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종합운동장 사거리)	용지더샵레이크파크아파트	의창구 원이대로 608 (시청 사거리)
	④ 3.15대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5 (3.15기념탑)	마산중부경찰서	마산합포구 3.15대로 6 (월영광장 교차로)
	⑤ 합포로-허당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5 (3.15기념탑)	서성광장 교차로-하나병원 앞 다리	마산합포구 허당로 84 (자유무역 정문 사거리)
	⑥ 3.15대로	마산합포구 3.15대로 457 (경남전자고 사거리)	석전 삼거리-마산시외버스 터미널	의창구 의창대로 41 (소계광장 교차로)
진주시	① 진주대로	향교로 3 (평안광장 교차로)	광미 사거리-진주교-고려병원	진주대로 594 (개양 오거리)
제주시	① 중앙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광양사가로 - 남문사가로-중앙사가로	중앙로 20 (탐동 사거리)
	② 산지로-관덕로-서문로	임향로 51 (용진교)	동문로터리-관덕정-서문사가로-용담사가로	용문로 157 (용문로터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서의 집회·시위)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서의 집회·시위) ①·② (현행 과 같음) <u>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 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 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정보관리과	
연 락 처	(02) 3150 - 2450

유상범 위원

1. 국민법제관의 의견제출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정비완료된 사례의 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법제관들이 제출한 의견이 실제 법령정비에 반영되는 반영률이 낮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담당자: 법령정비과 김덕원 사무관 ☎ 044-200-6574 >

< 담당자: 법령정비과 김경주 주무관 ☎ 044-200-6575 >

□ 온라인회의나 설문조사 등 국민법제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도입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 완료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9월
의견제출 건수	760건	897건	1,068건	756건
정비완료 건수	13건	13건	15건	8건
정비예정 건수	9건	6건	126건	27건

- 정비예정인 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소관 부처를 독려하거나 입안지원을 하는 등 신속히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법제관의 전문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의견이 법령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2. 국민법제관 구성이 특정 지역, 특정 직업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이 해마다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엔 아직 편중된 지역, 직업 비율*을 개선 해야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민 법제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지역) 국민법제관 중 서울·세종 지역 비율(33%, 5%)이 인구 비중(18%, 0.75%) 대비 높음
(직업) 국민법제관 중 교수·변호사 비율(6%, 8%)이 인구 비중(0.43%, 0.07%) 대비 높음

< 담당자: 법령정비과 김덕원 사무관 ☎ 044-200-6574 >

< 담당자: 법령정비과 김경주 주무관 ☎ 044-200-6575 >

□ 매년 국민법제관 신규 위촉 시 법령정비·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

구 분	'21년	'22년	'23년
여성	62명(31%)	65명(33%)	90명(45%)
비수도권	80명(40%)	91명(45.7%)	100명(50%)
30대 이하	89명(44.5%)	96명(48%)	96명(48%)
교수	24명(12%)	18명(9%)	12명(6%)
변호사	20명(10%)	16명(8%)	15명(8%)

○ 향후 국민법제관 위촉 시 특정 지역이나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과 직업의 국민법제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 탄희 위원

1.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법제처가 법령을 심사하기 위해 검토한 내용 일체와 심사하는 전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필요

< 담당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제처 법령심사는 법제(심의)관이 검토 및 심사 결과로서 제안 이유, 주요내용,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로 구성된 '심사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심사안으로 확정됨.
- 법제(심의)관은 부처가 제출한 접수안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한 사항 중 결재 시 참고자료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안 외에 추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앞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겠음.